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. 7. 9 선고 2019가단906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2020. 6. 11.

판결 선고2020. 7. 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G 전 810m²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7. 3. 20. 접수 제221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7. 3. 19.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B, D, E, F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2. 피고 C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지선

별지